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당의 시·도당이 설치한 정책연구소에 대한
경상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

■ 장경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865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정당의 시·도당이 설치한 정책연구소에 대한 경상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장경태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9. 10.
3. 회 부 일 : 2024. 9.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도당에 두는 정책연구소에 대해서는 설치·운영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일부 시·도당은 현행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중앙당에 100명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시·도당은 총 100명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처럼 시·도당이 각 당의 내부조직으로 두는 정책연구소의 경우 중앙당의 정책연구소와 달리 정원 외 인력운영이 인정되지 않으며 경상보조금 역시 별도로 배분되지 않아 시·도당에 배정된 정원과 국고보조금을 쪼개어 운영을 지속하여야 하는바, 정당의 운영과 내실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별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동

시에 일정 비율 이상의 경상보조금을 배분·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당의 정책 발굴·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정당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정당의 시·도당이 설치한 정책연구소에 대한 경상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28조제2항)

개정안은 정당의 시·도당이 설치한 정책연구소에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 (생략)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 [「정당법」 제 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 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 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은 청년정 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 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20 이상은 중앙당에 설치하는 정책연 구소----- ----- -----설치하는 정책연구소에, 100 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한 금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는 금액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상보조금을 매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정당에 지급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으로 하여금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및 100분의 10 이상을 각각 정책연구소 및 시·도당에 배분·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100분의 10 이상 및 100분의 5 이상을 각각 여성정치발전 및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도당이 자체적으로 두는 정책연구소는 정원 외 인력운영이 인정되지 않고,¹⁾ 경상보조금 역시 별도로 배분되지 않아 시·도당에 배정된 정원과 국고보조금을 나누어 운영하고 있어 정당의 운영과 내실 있는 연구를 위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1) 「정당법」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①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제1항에 규정된 유급사무직원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정치자금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에서 당해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연간 평균 인건비에 초과한 유급사무직원수를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

③제1항에서 “유급사무직원”이라 함은 상근·비상근을 불문하고 월 15일 이상 정당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봉급·수당·활동비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그 대가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 15일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람(청소, 이사 등 일시적으로 단순노무를 제공한 일용근로자나 용역업체 직원 등은 제외한다)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그들의 근로일수를 모두 합하여 월 15일 이상 매 30일까지마다 1명을 유급사무직원수에 산입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유급사무직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의 연구원

2. 근로에 대한 대가를 제공받음이 없이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비만을 지급받는 정당의 간부

이에, 개정안은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으로 하여금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중앙당에 설치하는 정책연구소에, 100분의 10 이상을 시·도당에 설치하는 정책연구소에 배분·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각 지역에 맞는 정당의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경상보조금 사용의 의무비율 강화로 인해 정당의 재정자율성이 악화될 소지도 있다고 봄.

다만, 개정안의 입법화에 대한 논의는 지역별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대표발의, 2024. 7. 22., 의안번호 제2101호)의 입법화가 선행되고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안) 주요 내용 >

내 용	현 행	개 정 안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수	· 중앙당: 최대 <u>100명</u> · 시·도당: 최대 <u>100인</u>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결정	· 중앙당: 최대 <u>200명</u> · 시·도당: 최대 <u>200인</u>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결정
시·도당별 정책 연구소 설치· 운영 근거 마련	신설	· 정당은 지역별 정책의 개발·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u>시·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 연구소 설치·운영 가능</u>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경상보조금 의무배분 대상·비율과 경상보조금 지출에 관한 정당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
